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으로서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도시 조성

2. 신청자격

-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이 응모 가능
 - 유사 목적의 스마트도시 사업에 선정됐던 지방자치단체 중 사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을 도과하지 않은 곳은 선정 제외
 -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2025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중복 응모 불가

※ 세부 신청 요건은 공모지침(붙임) 참조

- 최근 5년간('20~'24)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등의 협약 위반,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정 제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유(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해당)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

3. 지원규모

- 총 1개소,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 지원(국비:지방비= 1:1 매칭 조건)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사업자 등(이하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임
- 국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교부하며, 지방비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비와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19일(월) ~ 5월 21일(수) 18:00까지(접수마감)
- (제 출 처)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 사업1팀(지원기관)
-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신청기간 내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제출내용	• 공문 및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 공모신청서 원본 1부(직인날인) • 사업계획서 15부(각종 증빙 포함) • 지방비 매칭 협약서 등 첨부서류 1식 • 원본 파일(USB 저장)
제출방법	• 전자문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제출)	•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사)스마트도시협회 (2개 기관에 모두 제출)	•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6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0-4 (☎ 02-3667-5005)

5. 세부 절차 및 기준 : 공모 지침(붙임) 참고

6. 유의사항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 공고의 세부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공모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사업계획서(본문, 참고·증빙자료 등)는 **반드시 1권으로 제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976) 또는 지원기관(02-3667-50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지침 1부.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지침

2025. 3.

국 토 교 통 부

목 차

I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개요	1
II . 2025년 공모계획(안)	2
III . 평가 방법 및 기준	8
IV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0
V . 제출서류 및 양식	12

[양식 1]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	12
[양식 2]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계획(안)	13
[양식 3] 지방비 매칭 협약서	29
[양식 4] 광역자치단체 사업지원 협약서	30
[양식 5]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	31
[양식 6] 국고보조사업 수행 이력 및 보조금 반환 내역	33
[양식 7]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부문 예산반영 계획서 ·	34

I.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교통·환경 등 도시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발굴·실증하는 등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추진('18~)

○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경험 및 성과가 축적됐으나, 실증된 솔루션을 타 지역에 확산하고 성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

*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전국 113개 도시 지원('19~'24)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기술개발(R&D, '18~'22), 광역지방자치단체 구축·보급('22~'23)

□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며, 기후위기 대응(EU 및 OECD)과 디지털 포용성(UN Habitat)을 강조

* (EU 및 OECD)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도시, (UN Habitat)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일본 및 싱가포르) 디지털 약자 대상 포용 정책 등

☞ 사업종료 이후 지속가능성과 확산성을 고려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을 반영한 새로운 스마트도시 사업모델 필요

2. 사업목적

□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으로서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도시 조성

○ 지역의 성장과 함께 최근의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거점도시 조성

- 광역 데이터허브를 통해 스마트 솔루션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 도시*(City as a Platform)를 구현

* 모든 도시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 위에서 공공과 민간, 시민이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

Ⅱ. 2025년 공모계획(안)

1.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 스마트도시 거점으로서의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를 선정·지원
- (선정규모) 총 1개소
- (지원규모)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 지원(국비:지방비=1:1 매칭)
 - 국비(국고보조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지방비는 국비와 같은 규모로 매칭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현물 또는 현금) 가능

□ 신청요건

- (신청주체)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응모하되, 민간기업·공공기관·대학 등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공동 참여
- *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참여기관은 6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유의사항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 등(이하 '참여기관'이라 함)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참여기관은 해당 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임
-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동 공모에 응모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공모신청서 상 사업계획서에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일정 등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응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5항,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9조 제7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 참여(예정)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사업 대상지가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신청 가능

- 시·군이 응모하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협약서(붙임 양식 4) 제출

- (제외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공모신청서 제출을 하더라도 요건 미충족으로 평가 제외

- 유사 목적의 스마트도시 사업*에 선정됐던 지자체 중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을 도과 하지 않은 곳

- * 스마트시티 챌린지('22년까지 선정),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2년 선정),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3~'24년 선정),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23~'24년 선정)

-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2025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중복 응모 불가

- 최근 5년간('20~'24)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사업 등의 협약 위반,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붙임 양식 5 제출)

-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유(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해당)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

□ 선정 우대사항

- 스마트도시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수립 완료(국토교통부 승인)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정

- 다만, 공모신청서 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완료(최종보고서 제출 필수) 또는 국토교통부 승인 요청 건은 인정*

- * 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선정되는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완료(승인)해야 함

2. 지원사항

□ 국비 지원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실시계획 수립 비용 등에 대한 국비 보조
- 다만, 종전 사업지구*에 스마트 인프라·서비스 구축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추진 중인 경우 동일한 사업 내용 포함 불가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에 기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 규제특례 등 지원

- 혁신 기술을 실증,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해소 지원
- 지방자치단체, 기업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인프라 등 조성 지원을 위해 공간규제 특례*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혁신구역 등

3. 사업 추진방식

□ (사업내용) 스마트 거점 역할을 위한 인프라, 특화산업 지원시설 및 플랫폼도시 구현에 적합한 세부사업으로 구성

- 사업 구성 솔루션은 사업 종료시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연계하여야 하며, 데이터 분석 활용 방안을 제시

* 국토교통부 데이터허브 보급사업('22~'23), 기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스마트시티 챌린지, 지역거점, 거점형, 강소형)을 통해 구축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체 구축

** 타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허브 구축·보급을 기 지원하였으므로, 데이터허브 구축은 동 사업을 구성하는 솔루션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솔루션 중 2종은 오픈소스(Open Source)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하여야 함

<플랫폼도시 개념을 적용한 거점형 스마트도시 모델(예시)>



○ 총사업비의 35% 이상을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 재원으로 사용(붙임 양식7 제출)하여야 하며,

- ‘기후위기 대응’ 또는 ‘디지털 포용성’ 관련 목표 및 지표를 성과 목표(KPI)에 포함하여 설정

○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성과물(공공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은 총사업비의 3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 등 방식으로 발주 가능. 다만, 이 경우 직접 수행할 사업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참여기관(민간기업 등)은 지방자치단체 직접 수행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

○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 서비스 등 성과물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시행방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공종별 관련 법령·절차* 적용

* 「건축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 사업지역이 신규·재개발 지구로서, 사업내용에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계획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적용

* 사업지구에 적용되었던 종전 사업법(택지개발, 도시개발, 주거정비 등)에 따라 추진

-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서비스·인프라가 향후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R&D 연구성과, 국내·외 표준 등을 적극 활용*

* (예) ISO 등 국제표준 및 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국내표준 활용

□ 사업절차

①지방자치단체 선정 → ②사업계획 확정 및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체결 → ③실시계획 수립 → ④사업 착수 → ⑤중간 평가 → ⑥사업 완료 및 최종 실적보고

① (선정) 지방자치단체는 동 사업에 참여할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여 응모

-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 컨소시엄 구성 전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기한 내 컨소시엄을 구성(협약 등)하지 못하면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참고 : 주체별 역할(예) >

정부		▶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재정·행정 지원
지방자치단체		▶ 사업 주관, 사업비 매칭, 공공서비스 구축·운영 및 인프라 구축
참여 기관	지방공공기관	▶ 참여기관 및 사업비 관리 총괄 *(예)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지방 공사, 공단 등
	민간기업	▶ 사업비 투자, 민간서비스 구축·운영,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등

② (사업협약)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지원 사항, 사업관리, 성과 확산 등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 세부내용, 성과목표 등 보완

- 공모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협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사업비 감액 등 검토

③ (실시계획)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공정계획, 향후 지속가능한 관리·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한 실시계획 수립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획 수립·제출*(지방자치단체 → 국토교통부)하여야 함

*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감액 등 검토

- ④ (착수) 실시계획 수립(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즉시 사업 착수
- ⑤ (중간평가) 1~2차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 * 세부적인 평가방법, 내용 등은 선정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
- ⑥ (최종 실적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사업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내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 동 보조사업은 다년도(3년) 사업으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매년 12.31일)에도 3개월내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유의사항

- (예산)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성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감액 등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수행 지방자치단체가 타당한 사유없이 사업 불이행, 협약 위반, 중도 포기, 지방비 매칭 불가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약 가능
- (운영) 사업기간 종료 후 최소 3년이 도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계획·관리)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서비스·인프라와 기존 스마트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운영 필요
 -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권 및 활용방안 등은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 *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세부사항 협의
- (갈등관리) 공모 신청 시 사업에 대한 유관기관, 시민 등 이해충돌, 이견 대립 요소 등 현장 여건을 명확히 밝혀야 함
 - (사전에 밝히지 않은 경우 선정취소 가능)
 - 갈등의 존재 여부, 갈등의 심각성, 지방자치단체 갈등 해소 방안 및 노력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Ⅲ. 평가 방법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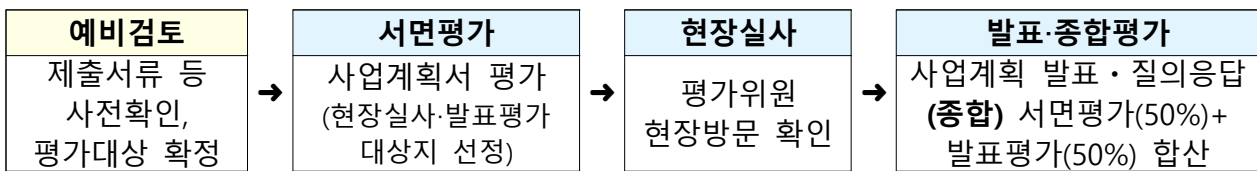
1.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위원 명단 등 정보 비공개)

* 해당사업 및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며, 평가회의는 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평가절차 및 방법



* 예비검토를 통해 신청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 제외

❶ (예비검토) 신청 요건 적격 여부,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여부 등을 사전 검토(지원기관)하여 평가대상 확정

❷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선정 예정 개소 수 3배수 이내에서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대상지 선정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 순 선정(단, 순위에 들었더라도 그 점수가 60점 미만 시 미선정)

❸ (현장실사) 현장 여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 확인

❹ (발표·종합 평가) 서면평가,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고 발표평가 (질의·답변 포함)를 통해 사업추진 지방자치단체 최종 선정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 순 선정(단, 순위에 들었더라도 그 점수가 60점 미만 시 미선정)

▶ 평가 과정에서 비위*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제외(취소)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 방해 등)

2.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50%)	총점	100	
	사업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15	• 대상지 여건, 도시잠재력, 도시문제 진단(5점) •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5점) •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스마트도시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5점)
	사업계획 우수성	40	• 거점형 스마트도시 공간계획(8점) - 대상지 적합성, 토지이용계획 적정성 등 • 스마트도시 인프라·서비스 구축계획(8점) - 플랫폼 도시 개념에 부합하는 혁신성 및 성공가능성 등 •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연계 및 활용계획(8점) - 세부사업별 데이터 연계, 데이터허브 통한 데이터 공유, 분석결과 활용, 개발 솔루션의 오픈소스 공개 방안 등 • 스마트도시 기반 산업 육성 계획(8점) • 사업성과의 전국 확산 계획(8점) - 거점형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 확산 방안 등
	추진체계 적정성	30	• 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구체성,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 적정성(7점)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지방자치단체·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 적정성, 거버넌스 구성·운영 방안(8점) • 사업실행 및 사업종료 후 지속 가능 운영 방안(10점) -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전담조직 구성, 예산, 제도,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업 방안 등) - 사업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방안 등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5점)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15	• 성과목표(KPI)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8점) • 거점형 스마트도시로서의 영향력 등 기대효과(7점)
발표 평가 (50%)	총점	100	
	사업 추진의지	40	• 사업 성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기관 협력 방안 및 사업추진 의지(20점) • 민간기업 사업모델 등 지속가능한 참여방안(10점) • 사업성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재정·행정적 지원방안(10점)
	사업계획 적정성	60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 적정성 종합평가(60점) (시민참여, 갈등요소 등 현장여건, 지역의 산업여건, 계획의 실현가능성, 효과성, 사업의 창의성·차별성 등)

IV.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2025년 5월 19일(월) ~ 5월 21일(수) 18:00까지**(접수마감)
- (제출처)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 사업1팀(지원기관)
-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신청기간 내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제출내용	• 공문 및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 공모신청서 원본 1부(직인날인) • 사업계획서 15부(각종 증빙 포함) • 지방비 매칭 협약서 등 첨부서류 1식 • 원본 파일(USB 저장)
제출방법	• 전자문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제출)	•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사)스마트도시협회 (2개 기관에 모두 제출)	•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6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0-4 ☎ 02-3667-5005

□ 유의사항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 공모 지침의 세부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공모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사업계획서(본문, 참고·증빙자료 등)는 반드시 **1권으로 제책**

※ 본 공모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협의 통해 적용여부 판단

참고

세부 추진일정(안)

※ 세부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추진시기	주요내용	주관
공모 공고	'25.3.17	▶ 공모지침 안내	국토교통부
↓			
사업설명회	'25.3.25	▶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국토교통부
↓			
사업신청 및 접수	'25.5.19 ~ 5.21	▶ 공모신청서 접수	지자체 → 국토교통부, 지원기관
↓			
예비검토	~'25.5월	▶ 공모신청서 제출서류 등 확인, 평가대상 확정	국토교통부 지원기관
↓			
평가 및 선정	'25.5~6월	▶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 종합평가 및 최종대상지 선정	평가위원회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선정 후 2개월내)	~'25.8월	▶ 전문가 컨설팅 통한 사업계획 확정 ▶ 협약체결(국토교통부↔지자체)	국토교통부 ↔ 지자체
↓			
실시계획 수립 (협약체결 후 6개월내)	~'26.2월	▶ 실시계획안 제출(~'26.2) * 실시계획안 적정여부 검토 후 국토교통부 승인('26.2~)	지자체, 참여기관
↓			
착수	실시계획 승인 후	▶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스마트도시법 제24조)	지자체, 참여기관
↓			
사업실적 중간평가	미정	▶ 1~2차년('25~'26년) 사업실적 평가	국토교통부
↓			
사업완료	~'27년	▶ 사업 완료 이후 지속 운영	지자체, 참여기관

V.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1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청인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시장, 군수)			
책임자	○○실·국 ○○과장 ○○○ (☎000-000-0000)			
담당자	사무관 ○○○ (☎000-000-0000, ooo@korea.kr) 주무관 ○○○ (☎000-000-0000, ooo@korea.kr)			
신청 사업	사업명	○○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사업위치	○○시 ○○동 일원		
	사업면적	000,000㎡		
	사업기간	2025 ~ 2027.12		
	추진목표	추진목표 작성기재		
	사업내용	사업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드러나도록 3줄 이내 요약		
	사업비 (억원)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참여기관 부담)
	참여기관	민간기업 등 참여기관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명시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각 15부 2. 개발사업시행자, 민간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관련 자료 각 1부 3. 파일 원본(USB, CD 등) 1부			

위와 같이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합니다.

2025년 5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지방자치단체명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안)**

2025. 5.

지방자치단체명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요약서

※ 4쪽 이내로 작성,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지방자치 단체명	○○○시·도, ○○○시·군	참여기관	모든 기관 명시
사업명칭	지방자치단체명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부제 :)		
사업개요	▪ 사업대상지 개요		
사업 필요성	▪ 대상지 여건 및 도시문제 ▪ 거점형 스마트도시 추진 필요성 ▪ 기본방향,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사업계획	▪ 거점형 스마트도시 공간구상 ▪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운영 계획 ▪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연계 및 활용 계획 ▪ 스마트도시 기반 산업 육성 계획 ▪ 사업성과 확산계획		
추진체계	▪ 사업단계별 추진계획 ▪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 지방자치단체,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계획 ▪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사업 운영방안	▪ 사업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 ▪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KPI) ▪ 기대효과		
담당자	▪ ○○○시/군 ○○○실·국 ○○○과 - 과장 직급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abc@korea.kr) - 팀장 직급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def@korea.kr) - 담당 직급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ghi@korea.kr)		

목 차

I. 사업개요 ...	1
1. 사업명	0
2. 사업 대상지 개요	00
[별첨]	
1. ○ ○ ○ ○	00

작성 방법

◆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 필요

-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공모신청서(사본), 요약서(4쪽 이내), 목차, 본문(40쪽 이내) 및 참고자료(분량제한 없음),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A4 세로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 링스프링 방식의 제본 금지
-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4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 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 (본문) 본문은 A4 40쪽 이내로 제한하며, 참고·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순서에 따라 별첨
 -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하고, 위치를 본문에 표시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mm,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mm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는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 활용 금지
- (발표자료) PPT 20쪽 이내로 작성
 -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계획 목차 구성(안)

1. 사업개요

- 1-1. 사업명
- 1-2. 사업 대상지 개요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 2-1. 대상지 여건 및 도시문제
- 2-2. 거점형 스마트도시 추진 필요성
- 2-3. 기본방향,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2-4.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3. 사업계획

- 3-1. 거점형 스마트도시 공간구상
- 3-2.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운영 계획
- 3-3.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연계 및 활용 계획
- 3-4. 스마트도시 기반 산업 육성 계획
- 3-5. 사업성과 확산계획

4. 추진체계

- 4-1.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
- 4-2.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 4-3. 지방자치단체,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계획
- 4-4.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 4-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5. 사업 운영방안

- 5-1. 사업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
- 5-2. 사업완료 이후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

6.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6-1. 성과목표(KPI)
- 6-2. 기대효과

목차별 작성요령

1. 사업개요

1-1 사업명

- **지방자치단체명**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부제 :)

1-2 사업 대상지 개요

- 사업위치 : 1) 법정/행정동 구분 입력, 2) 지번(도로명)은 사업대상지 대표지번(도로명)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도로명) 등
- 사업면적 : 00,000㎡
- 사업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대상지 유형 : 신규 또는 재개발 지구, 기존도시 등 유형을 표기, (재)개발 지구의 경우 종전 사업유형도 같이 표기(예, 00지구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 사업위치도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 시·도에서 시·군·구의 위치, 2) 시·군·구에서 대상지역의 위치, 3) 행정동에서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기
- 내용을 서술한 후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00 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사 업 위 치	00시 00구 00동 00도로 일원
사 업 면 적	00,000㎡
사 업 기 간	0000년. 0월 ~ 0000년. 0월
대상지 유형	신규개발(00지구 도시개발)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위치도 1>	<위치도 2>
---------	---------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2-1. 대상지 여건 및 도시문제

- 대상지 여건
 - 일반현황 위주의 기초자료 단순 준용 및 제시는 지양
 -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지역적 여건 분석
 - * (예) OO시는 OO권 북부지역에서 전국의 스마트 거점을 S자로 이어주는 시작점→ 국가에서 추진 중인 UAM 산업의 실증 적용을 위한 인프라 마련
- 도시 잠재력 및 문제 등 종합진단
 - 대상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을 종합진단하여 광역권에서 거시적으로 분석
 - * (예) OO시는 미래 통일 국토 스마트도시의 지역적, 공간적 의미의 시작점
 - 도출된 도시문제는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야 함
 - 신규 개발 지구의 경우 도시의 특성을 도출, 마찬가지로 도시의 특성은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스마트인프라 및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야 함

2-2. 거점형 스마트도시 추진 필요성

- 도시문제 해결 및 해당 지역의 잠재력·특성 발전을 통해 전국의 스마트 거점으로서 기능·역할을 하기 위한 지역 역량 및 필요성 제시

2-3. 기본방향,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 기본방향 및 사업의 목표
 - 대상지 여건, 도시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추진전략 수립

2-4.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기술
 - 도심융합특구, 도시첨단산단, 도시재생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 개요 및 내용 등을 표기하고 연계성 기술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관련 증빙자료(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공문,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요청 공문, 스마트도시계획 자료,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 등) 제시

3. 사업계획

3-1. 거점형 스마트도시 공간구상

-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에 맞춰 공간계획을 제시
 - 공간계획에 대한 삽도 등을 통해 세부설명 제시
 - 공간계획은 기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자율주행서틀 노선·소유차 제한구역 등 공간개념의 설정 등 다양하게 제시 가능
 - 공간계획은 스마트인프라, 서비스, 산업육성공간 등 사업계획 내용 반영 (아래 예시 참고)
- 기존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기업지원 공간, 신규개발 및 재개발 등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포함

< 참고 : 공간계획 특화 방안 예시 >

1. 원도심 공간계획 사례 (2022년 광주광역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통해 인쇄거리, 상권르네상스 등 시행하고 있으나, 원도심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문제 상존
 - 교통, 안전 환경, 에너지 특화구역 설정 및 앵커시설(RE100메가스테이션) 배치



2. 신도시 공간계획 사례 (2023년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울산 혁신도시 내 모빌리티, 에너지, 라이프, 데이터 등 솔루션-서비스를 구축하고 성과실증 결과를 원도심(성안동 일원)과 공유하는 공간계획 구상



3-2.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운영 계획

■ 스마트 인프라

-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에 따라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
- 특히, 드론, 로봇, PM(Personal Mobility) 등 새로운 서비스가 도시에서 원활히 작동 되도록 도시별 테마에 맞춰 도시시설을 특화
- 사업추진 시 국가 R&D, 표준 등 연계·활용계획 포함
- 특화된 스마트 인프라는 아래 예시 참고

< 참고 : 스마트 인프라 예시 >

1.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유소를 신재생에너지 충전소로 전환, 도민 생활, 관광거점 내 PM 주차장 및 충전 인프라, 사업운영 및 지원 앵커시설인 융합형 스마트 플러스 허브 구축



2. 스마트 교통 인프라 (대구광역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 대구 시내 CBD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 엣지 컴퓨팅 가능한 지능형 교통CCTV 설치하여 인공지능 신호제어 및 교통량 분산 유도
- 기존 주거 및 직장 밀집에 따른 인구과밀지역이며, 도시계획 상 도로확장이 어려움



■ 스마트 서비스

-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에 따라 스마트 서비스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
-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 현재 기술수준으로 구축·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노베이션센터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
- 서비스의 개념, 공간범위, 사용대상 등 시나리오 제시
-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서비스 구축위치 등을 그림으로 제시
- 사업추진 시 국가 R&D, 표준 등 연계·활용계획 포함
- 각 서비스는 별도로 과제 카드화하여 제시(아래 양식 참고)

< 참고 : 도입 서비스 목록 양식 >

1. 도입 서비스 목록

연번	1	분류	교통, 환경 등	서비스명	000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시나리오(요약)			
서비스 추진계획		추진체계			
		이슈 및 대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추진일정			
		소요예산			
서비스 운영계획		운영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			
서비스 시나리오		기존도시 01 개방·보통형 환경·교통·서비스 제공 개성·정체, 대중교통, 건물, 상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 02 중요한 시간·공간 대중교통, 건물, 상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 03 필요할 때·입력하는·필요한 서비스 제공 필요할 때·입력하는·필요한 서비스 제공하여 운영. 04 새로운·전자·서비스·제공 필요할 때·입력하는·필요한 서비스 제공하여 운영. 스마트시티 01 개방·보통형 환경·교통·서비스 제공 개성·정체, 대중교통, 건물, 상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 02 중요한 시간·공간 대중교통, 건물, 상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 03 필요할 때·입력하는·필요한 서비스 제공 필요할 때·입력하는·필요한 서비스 제공하여 운영. 04 새로운·전자·서비스·제공 필요할 때·입력하는·필요한 서비스 제공하여 운영.			

< 참고 : 공간계획 연계 서비스 설명 예시 >

- 시 기반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및 신호체계 알고리즘 개발, 도심 교통흐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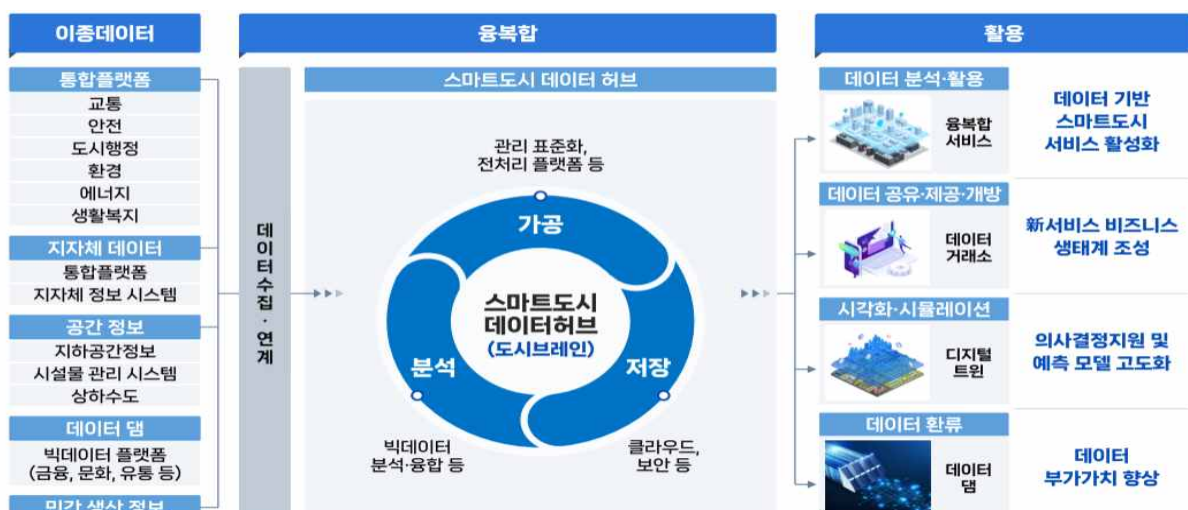
< 출처: 2022년 대구광역시 시티챌린지 >

3-3.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연계 및 활용 계획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광역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 효율적인 도시운영 및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성과 확산방안 제시
 - 광역지자체 내 사업소,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스마트도시 관련 시스템 연계 방안 제시
 - 데이터허브 내 도시데이터를 지속 축적하고 다른 지역 데이터허브와 연계·확산

< 참고 :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활용 예시 >

- (데이터허브 개념) 교통·환경·에너지 등 도시의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시운영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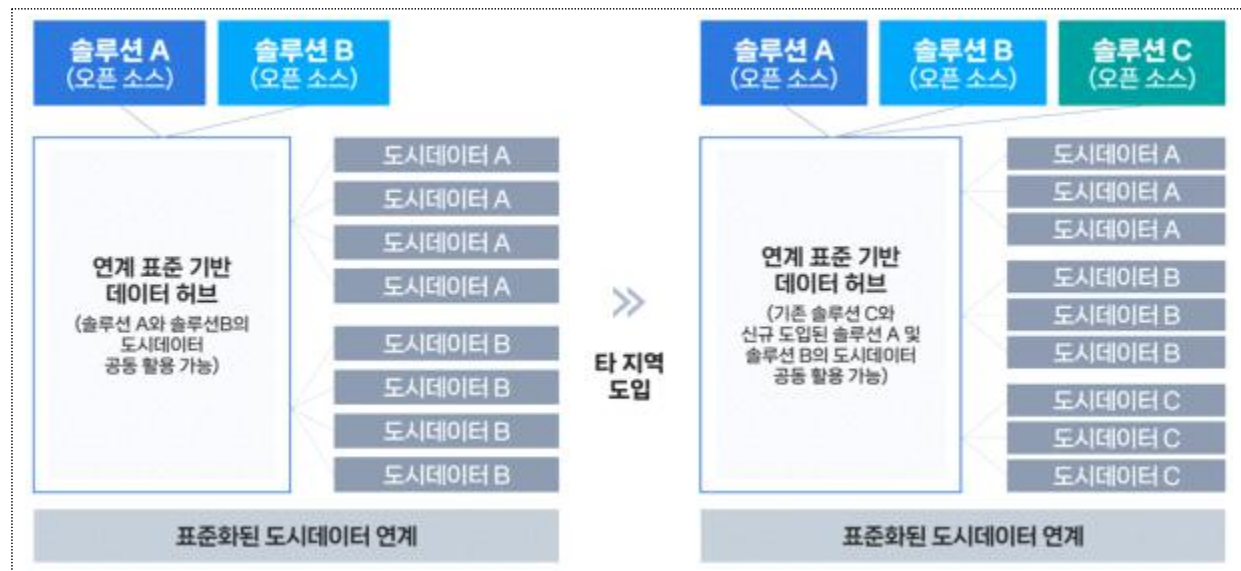


- (연계활용) 거점형 스마트도시 세부사업별 데이터와 기존 광역 데이터허브를 연계하여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개방, 시각화 시뮬레이션, 데이터 환류 등에 활용



■ 개방형 오픈소스 솔루션 추진방안

-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솔루션 중 2종은 클라우드 기반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 오픈소스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
- 데이터허브 표준에 따라 솔루션 연계를 통해 광역지자체 내 다른 시·군·구 간 데이터 공동활용 가능하도록 개발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22~'23) 또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22년 시티챌린지, '22년 지역거점, '23년 거점형, '23년 강소형) 외 자체적으로 광역 데이터 허브 구축하여야 하는 경우, 시스템 구성, 외부연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제시

※ 동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데이터허브 구축비용으로 사용불가

< 참고 : 오픈소스 활용방안 예시 >

-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광역 데이터허브를 통하여 광역 및 전국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플랫폼 연동 API를 제공하고, 커스텀 개발이 가능하게 전체 소스를 오픈하여, 활용할 수 있게 제공



(출처: 2024년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3.4. 스마트도시 기반 산업 육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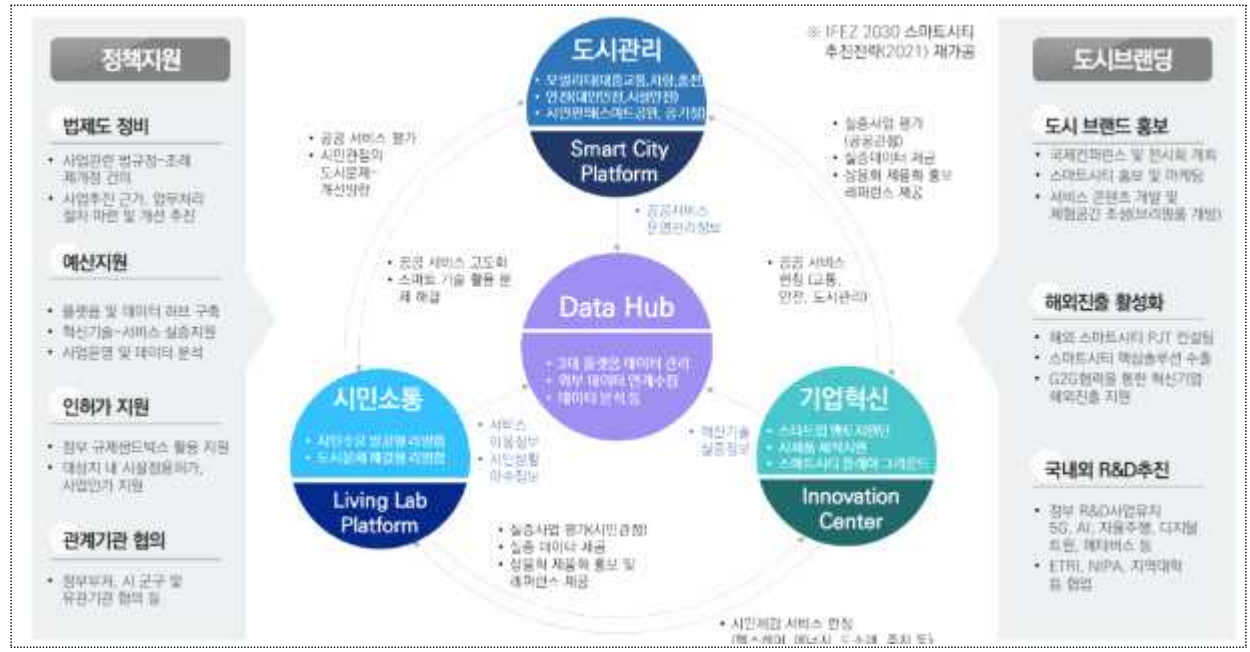
-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 개발, 시민참여 리빙랩 등 혁신기업의 사업화 지원 모델 제시

< 참고 : 기업 사업화 지원 모델(안) >

- (실증지원) 시민 아이디어, 민간기업의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제품 제작·실증 및 실증공간 지원
 - * 기획·설계·제작·시험 등 아이디어의 현실화를 지원할 수 있는 오픈랩(Open Lab) 운영
- (창업지원)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멘토링·컨설팅·교육, 시설·공간·인큐베이팅 등 성장단계별 지원
- (규제특례 지원) 실증 결과물이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혁신제품 지정 등 시장진출 지원
- (리빙랩)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여 솔루션 실증까지 이어지는 시민 참여 플랫폼 마련
 - * 도시문제 발굴(시민) → 해결방안 제시(시민) → 시제품 제작·실증(민간기업) → 실증·피드백(시민)
- 사업대상지 내 특정지역을 서비스 및 인프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기업참여 방안 등을 제시

< 참고 :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혁신모델(안) 예시 >

- 데이터허브를 정점으로 도시관리, 기업혁신, 시민소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지자체의 정책지원을 통한 도시브랜딩과 산업육성 도모



3-5. 사업성과 확산계획

- 거점형 스마트도시의 조성 취지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도입된 스마트 서비스 및 인프라의 지역 내 확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추진체계

4-1.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

- 사업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단계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 단계별 세부 사업 관리계획
- 각 세부사업별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사업 전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

4-2.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및 사업 수행 주체별, 연도별, 사업별로 재원조달계획(예산 집행계획 포함)에 대해 표 등을 활용하여 제시
- 사업내 민간투자가 포함된 경우, 투자의향서, 투자협약서 및 민간투자 촉진방안 등 증빙자료로 제시

< 참고 1 : 공종별 내역 양식 >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		
				계	국비	지방비	민간	'25	'26	'27
합 계(①~③)										
소 계(①)										
도시공간수립		-	'00~'00							
소 계(②)										
주요서비스		-	'00~'00							
소 계(③)										
사업지원	리빙랩	-	'00~'00							

< 참고 2 : 비목별 내역 양식>

(단위 : 백만원)

비목별 예산계획					
비목별	사업 기간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참여기관 부담)	총 사업비
인건비	'00~'00				
운영비	'00~'00				
..					
..					

* 사업비 비목구분은 및 내역작성은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참고

4-3. 지방자치단체,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계획

-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예시>

정부		▶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재정·행정 지원
지방자치단체		▶ 사업 주관, 사업비 매칭, 공공서비스 구축·운영 및 인프라 구축
참여 기관	지방공공기관	▶ 참여기관 및 사업비 관리 총괄 * (예)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
	민간기업	▶ 사업비 투자, 민간서비스 구축·운영,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등

- 참여기관 구성 관련 증빙자료 제출(공모 공고문, 선정 결과 등)하고, 참여기관 구성 예정인 경우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계획을 제시

4-4.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주민협의체 등) 구성·운영방안 제시(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 MOU 등 있는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
- 문제 도출, 계획 수립, 구축·운영, 확산 등 사업 단계별 시민,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방안 제시

4-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자)의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대책
-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방법 등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기술

5. 사업 운영방안

5-1. 사업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

- 공공 관리영역(B2G)과 민간 관리영역(B2B, B2C)을 구분하고 사업관리 및 향후 운영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명시
 - 사업별 성과물 귀속주체 및 운영주체 명시
 - 사업 구축단계 후 운영단계 자체 수익모델 제시
(수익성 낮은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 등 검토)
 - 사업 구축 완료 후 운영목적 SPC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SPC의 지속가능성, 자산 및 조직구성, 지자체 관리감독 기능, 출자사 이탈 방지방안 등 엄격히 고려

< 참고 : 민간수익서비스 예시 >

서비스 제공	▶ 아파트 공동관리, 생활편의(택배, 공간공유, 광고), 스마트교통(주차, PM), 에너지관리,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 민간 서비스 구축·운영
수익시설 운영	▶ 민간이 공용공간내 점·사용료 면제를 통해 수익시설 설치·운영 * (공용공간) 도로, 공원, 광장 및 대지 내 공지 등 (수익활동) 광고, 자판기, 데이터이용 등

5-2. 사업완료 이후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

-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예산지원방안, 인허가 지원방안, 관계기관 협의 방안 등 종합하여 제시
 - 법제도 정비 : 사업 실행 및 운영지원 관련 조례 재개정, 내부지침 개발
 - 예산지원 : 사업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준공 후 예산보조 방안
 - 인허가 지원 : 정부 규제샌드박스 활용지원, 사업대상지 내 시설점용허가, 사업 인가 지원 등
 - 관계기관 협의 : 정부부처, 관계 시·군·구 및 유관기관 협의 지원

6.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6-1. 성과목표(KPI)

- 사업 구축단계 및 사업종료 후 운영단계를 구분하여 세부사업별 정량적 성과목표(KPI) 제시
 - 사업종료 후 운영단계 KPI의 경우, 이용만족도 등 피상적인 성과지표를 지양하고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제시
(예)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 월간/연간 시민 이용객 수,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교통사고 감소율 등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 월간/연간 시민 이용객 수, 건물-빌딩의 탄소 저감량 등
- 성과목표 측정에 대한 실행방안 제시
 - 지자체 또는 컨소시엄 구성사 자체조사, 외부용역 수행 등
- 기후위기 대응 또는 디지털 포용성 관련 목표 및 지표를 포함
(예) 교통정체 해소, PM 운영, 에너지 관리 솔루션, 쇠퇴지역 지원 등

6-2. 기대효과

- 도시문제 해결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제시
 - 정량적 기대효과 : 수치화를 통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정성적 기대효과 : 전국의 스마트 거점으로서 기능·역할 위주로 작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 기타 민간 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 연차별, 사업단계별(구축/운영·관리단계)로 세분화하여 제시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지방비 매칭 확약서

우리 신청지방자치체명에서 제출하는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동 사업 공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연차별	지방비 매칭		비고
	금액 (억원)	기한	
계(3년)			
2025년		2025.9월	
2026년		2026. 1월	
2027년		2027. 1월	

2025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지원 협약서

〇〇〇시·도는 신청지방자치단체명에서 제출하는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귀 국토교통부의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확정될 경우, 신청지방자치단체명 가(이) 스마트 거점으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〇〇〇시·도의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활용, 서비스 및 솔루션 연계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관의 관할 광역자치단체장) (단체장명 〇〇〇)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

우리 **신청지방자치단체명**은 최근 5년간 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위반하거나 중도포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신청 이후 이와 같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종 선정·확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수행 목록 1부.

2025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수행 목록

* 최근 5년('20~'24)

공모 선정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계	국비	지방비	민간	
		'00.00~'00.00					

양식 6

국고보조사업 수행 이력 및 보조금 반환 내역(최근 5년, '20~'24)

※ (작성대상) 국토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을 포함한 정부부처(청)가 지원한 국고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

국고보조사업 수행 이력 및 보조금 반환 내역(최근 5년, '20~'24)

(단위: 백만원)

연번	주관부처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교부결정 취소· 반환 금액	사유
1			'00.00~'00.00						
2									
3									
4									
5									
...									
...									

2025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부문 예산반영 계획서

(단위: 억 원)

사업예산(안)						
구분	세부사업	국비	지방비	민자	총사업비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합계		000	000	000	000	000 (00%)
구분1	000 구축					
	000 솔루션	000	000	000	000	기후위기 대응 (00%)
	000 솔루션					
	000 솔루션	000	000	000	000	디지털 포용성 (00%)
	000 솔루션					
구분2	000 플랫폼					
	000 솔루션	000	000	000	000	디지털 포용성 (00%)
	000 플랫폼					
구분3	000 솔루션					
	000 솔루션	000	000	000	000	기후위기 대응 (00%)
	000 솔루션					

2025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000)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